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10. 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0월 4일(수) 14:00~17:50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57호 및 제166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2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57호 『삼성증권(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 신용공여를 한 여러 계열사 임원이 있는데 그중 OOOOOOOO(주) 3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와 관련해서 조금 조직적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의견도 가능할 것 같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신용공여 관련해서 위반의 방법을 '상', '중', '하'로 판단할 때 조직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반의 방법을 '상'으로 볼 수는 있으나, 동 건의 경우

에는 회사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전사적 차원의 영업행위라거나 다수의 점포가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적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음. OOOOOOOOO(주)의 경우에는 본 점이 아닌 OOOOOOOOO(주) 소재가 있는 OOWM 1개의 지점에서 OOOOOO 우리사주 유치 마케팅 차원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적 차원의 영업행위라든가, 다수의 점포가 관련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음.

- (위원) 여타 계열사 임원에 비해서 OOOOOOOOO(주) 임원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매수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전체 매수금액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OOOOOOOOO(주) 임원의 경우 그 불법의 양태라든지, 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 불법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조치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됨.

- (보고자) 말씀하셨듯이 현재 (안)에서 상향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방법을 '상'으로 올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에서 '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지금 양정기준에 실시된 내용에 따라 판단해 보면 본 사안은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음.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OOOOOOOOO(주) 임원 이외에 다른 계열사 임원과는 위반의 방법과 시장질서 영향력에 대해서 1단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산정하였음.

-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공여 금액이 1인당 10억 원에서 28억 원이 넘어 총 6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OOOOOO 우리사주

유치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서 우대금리가 적용되었음.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음. 아울러서 언론에 공표가 되어 해당 금융기관 외에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서 신용질서를 훼손한 경우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중'에서 '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위원) 동의함.

○ (위원) 제가 아까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OOOOOOOO(주)에 보였던 불법양태라든지, 삼성바이오 합병과 관련되었던 사회적 논의나 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에서 '상'으로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저도 동의함.

- (보고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 양정기준과 저희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들에 비추어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음.

○ (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서 '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함.

- (보고자) 알겠음.

○ (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7호 안건은 원
안의결하겠음. 다만, OOOOOOOOO(주)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의 경우 본점 승인을 거쳐 거액 대출이 실행된 점,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 참작사항 중 '위반행위 방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에서 '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66호 『(주)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 감경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감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동의함.

○ (위원) 동의함.

○ (위원장) 제166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前경영기획본부장 △△△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하

여 가공매출 처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2019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담당이사로 서명하는 등 재무담당임원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임. 다만, △△△은 이러한 위반사실을 現경영진에게 보고하여 회계부정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후 사업보고서 정정에도 적극 조력하여 위반사실의 해소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이에 외부감사 규정의 감경사항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보아 특별히 정상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前경영기획본부장 △△△의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감경하여 2억 201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67호 『(주)엔에스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8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

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前대표이사 △△△임. 첫 번째, 지금 문제되는 거래들은 XXX이라는 직원이 횡령을 위해 실시한 거래와 이른바 선매출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XXX의 횡령거래는 당시 임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고, 선매출 거래는 당시 회계감사나 상장감리, 거래소 상장심사 어디에도 회계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없었음. 두 번째, 저는 지금 문제되는 위반대상 거래행위 자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 (주)OOOOO을 인수한 후에 모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만 출근도 거의 하지 않았고 특별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는 등 개별 세부적인 사업이나 거래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 특히, 인수 후 ○○○ 대표에게 상장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무조항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지시할 동기가 없음. 단지, 제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제가 수궁하기가 매우 어려움.

▶ (진술인) 現대표이사 ◎◎◎임. 금감원에서는 내부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주도하였던 당시의 경영진들이 회계위반을 인식하였다고 보고 前경영진들에 대해 현재 검찰고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지정감사와 회계감리를 수감하였고 그 이후에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라이선스 부여가 수익인식 요건이라고는 생각할만한

지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반행위 당시나 내부조사 당시의 경영진들은 회계오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음. 당사는 감리를 수감하면서 감리당국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회계오류를 모두 수정하였음. 금감원 감리 착수 이전에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조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위반행위 관련자들은 모두 퇴사시켰음. 또한, 불과 몇 개월 전에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심사를 받고 적격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기에 양정기준에서 규정하는 검찰에 고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 (진술인) 前CFO □□□임. 본인은 내부감사를 통하여 회사 내 비리 등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미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제가 내부감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금감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영업직원의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음. ‘한정의견 가능성’이라는 내부보고서 문서 내의 단어만 보고 제가 알고 있었다는 추측은 너무 억울함.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업무프로세스상 라이선스 발급 및 매출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관점에서 지적한 내용일 뿐임. 이러한 저에게 내부감사시 회계오류를 알았는데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검찰고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거래처와 담합을 하여 허위의 발주서를 부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을 조기인식하는 과정을 보면 매출액의 5~10%를 수수료로 약속했다고 되어 있음. 매출액의

5~10%라는 것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회사가 용인해서 가능한 것 아닌지?

▶ (진술인) △△△ 대표와 저 □□□ 전무는 (주)OOOOO의 영업에 있어서 일절 관여를 안했음. 인수 이후 모든 영업 총괄은 ○○○ 대표가 주관하였고 모든 결재라인도 ○○○ 대표가 주관하였음.

○ (위원) 거래처에 부탁해서 채권채무조회서를 사실과 다르게 회신해 달라는 것이 CFO의 인지 없이 가능한 일인지?

▶ (진술인) 매출채권의 거래처 관리도 회계팀을 통하지 않고 영업부 직원을 통해서 회신을 받았음. 그리고 모든 발주서에 최종 사용자 기입을 해서 저희 회계팀에 가져왔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이 분식은 2017년말에 (주)OOOOO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려야 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일어난 일임. 그 목적은 바로 2018년 3월 (주)OOOOO의 증권 상장일 것임. 회사를 인수한 후 (주)XXXXXXXX는 △△△, □□□ 등을 통해 (주)OOOOO의 상장요건을 맞추고 상장시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매출로 잡아서 안 되는 2017년 선매출을 매출로 계상한 것임. 2017년 7월에 이미 (주)OOOOO를 매각하여 회사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매출조작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음.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를 무혐의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前대표이사 ○○○임. 저는 2017년 회사를 매각할 당시에 (주)XXXXXXXX가 회사를 상장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상장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이익도 전혀 없음. 그리고 지난번 감리위원회에서 제가 연봉으로 충분히 많은 금액을 받고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 전의 연봉대비 약 40% 가량 삭감된 상태이고, 이러면서까지 제가 공모해서 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회계서류, 결산자료에 제가 단독적으로 서명되었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 대표의 결재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게 문제인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서명을 했고 △△△ 공동대표이사의 사인이 이원화되어 있는 결재서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의견을 달리하신다면 저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진술인은 외부감사법 위반이나 회계기준 위반 이런 법률적인 판단과 별도로 '우리가 매출을 앞당겨서 잡고 있구나' 하는 선매출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 (진술인) 전혀 몰랐음.

○ (위원) 본인이 진술하신 내용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

다는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 (진술인) 저는 선매출 자체가 기존의 영업행태에 따라서 총판이나 대리점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유리한 가격조건 등으로 팔려고 확보해 놓는 그런 매출로 생각을 했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매출로 생각하지는 못했음.
- (위원) 선매출이 2016년부터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회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매출이라면 거래처에 왜 5% 내지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출하였는지?

▶ (진술인) 그 부분은 저는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고 매출에 수수료를 줬는지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금번 금감원 조사에서 영업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임.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금감원의 지적 취지를 정리하면 선매출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법률적 판단까지 나가지 않았더라도 매출로 인식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은 것을 매출로 잡았다는 인식이 적어도 전·후 경영진에 다 있고, 동기로 경제적 유인도 있다는 취지인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44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69호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동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동의함

(16시34분 정회)

(16시46분 속개)

□ 의결안건 제170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법원 판례,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다수의 학계 논문에서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를 악재성 정보로 보고 있지 않은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과연 본 건 자사주 처분 결정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설령 본 건 자사주 처분결정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인의 보유주식 매도는, 주가 상황에 대한 보고로 2020년 1월 16일 갑작스레 다음날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자사주 처분결정과 관계없이 진술인의 대출금 및 세금 등의 상환을 위한 별개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점, 매도패턴이 통상적인 악재성 정보 이용행위와 상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인에게 자사주 처분결정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이용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람.
- (위원) 2019년 11월 12일에 자기주식 처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소집했는데 이후의 주가변동에 따라서 이사회가 달리 개최되기는 했습니다마는 2019년 11월 12일에 어느 정도 가격이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는 대략적인 방향은 그 무렵에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 ▶ (진술인) 11월 12일 정도에 일단은 자기주식 매도하는 큰 틀은 결정된 상황임.
- (위원) 12월 24일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 ▶ (진술인) 아파트 분양대금 중에 중도금을 마련해야 되는

일정이 2020년 1월말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음. 아파트 중도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력으로 마련하려고 이왕이면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임.

○ (위원)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득을 가지고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셨는지?

▶ (진술인) 납부를 못 했음. 왜냐하면 스톡옵션 행사 납입금을 마이너스통장에서 조달하였는데 매도한 금액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을 하여 바로 상환이 되었음. 중도금 마련을 위해 조금 더 남은 것을 팔아야 되는데 신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해서 제가 상당히 겁이 났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이것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주식을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팔아서 아파트대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진실성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겁이 났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딱 한 금액을, 1억 6,400만 원인가 스톡옵션 행사 대금 값고 세금 6,400만원과 4대 보험료를 내고 나니까 ±0이 된 상황임. 아파트 대금에 투입할 상황이 전혀 안 되었음.

○ (위원) 2020년 1월 16일 09:09부터 주식을 팔고 있다가 09:32경에 32,000원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 자사주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주식을 팔고 있을 때 대량의 매도물량이 나오면 유리한 조

건으로 매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 ▶ (진술인) 저도 지금 와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제 자신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 머리 속에서는 일단 제 것 10,000주 정도 스톡옵션 행사한 것은 팔아야 되고, 또 주가가 좋으니까 이왕이면 회사 자기주식도 비싼 값에 팔면 되겠지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임.
- (위원) 내부적으로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되어 검토한 자료를 보면 7% 정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 ▶ (진술인)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표에 보면 판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립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음.
- (위원) 2020년 1월 31일에 중도금 납부를 하려 했다고 하셨는데 그 통지를 언제 받으셨는지?
 - ▶ (진술인) 통지 자체는 12월 중순 이후에 받았는데 아내가 11월초인가 중순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음.
- (위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스톡옵션 20,000주 중 10,000주를 전환하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매도물량이 많이 나오면 본인이 비싸게 팔 수 없는데도 자기가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처한 지위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러워서 가능하다면 저는 수사기관 통보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임.
- (위원)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본인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자사주 처분을 건의할 이유는 없어 보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 물론 자사주를 처분하는 날에는 주가가 하락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임. 그래서 자기 주식처분이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듦. 그래서 저도 통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
- (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미공개정보가 존재는 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12월초·중순에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며칠 안 지나서 바로 매도를 했고 매도하는 중에 이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에게 보고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함.

○ (참여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 검찰에서도 이 상태 그대로 보냈을 때 바로 기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사항이 있음.

○ (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0호 안건은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 검찰통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71호 『○○○ F 201705 등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2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본 건 펀드는 기초자산으로 발행해 기초지수, 수익률 등이 각각 다른 DLS를 편입하였으며, 펀드 자체도 설정일, 판매보수, 수익률이 각각 다른 별개의 펀드로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2017년 10월31일 개정 자본시장법 및 2018년 4월30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동일한 증권의 판단기준을 신설하였으나, 본 건 펀드는 이에 앞서 설정된 것으로 본 건 펀드 설정 당시에는 동일한 증권의 판단기준이 부재하였음. 동일한 증권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규가 부재한 상태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당사에게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본 건 사전통지에서는 과징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펀드의 운용기간을 56개월로 파악하였음. 이는 본 건 펀드 설정시부터 사전통지시점까지의 기간을 운용기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당사는 신탁계약기간이 26개월이 경과됨에 따라 2019년 12월31일 DBSANITARIA 2호, 2020년 1월8일 및 1월10일에 DBSANITARIA 3호·4호 해지를 하였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였음. 실제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운용판매, 기타 관리보수를 펀드에서 일절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무자관리만 있을 뿐 통상적인 운용행위는 신탁계약기간 도래와 동시에 종료된 상태임. 따라서 설령 당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 것이라고 해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운용기간은 56개월이 아닌 본 건 펀드의 신탁계약기간인 26개월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유사한 사안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소송의 결과가 당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연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있기 전에도 법조문을 보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라고 한 내용은 발행시기가 같은 증권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문상 명확해 보임. 그리고 법문에 '같은 증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지?

▶ (진술인)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기준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었고, 금감원으로부터 2017년 9월경에 사모시리즈펀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도 DLS와 유사한 ELS의 경우 기초자산, 수익구조, 수익률, 기준가격 결정에 발행사 등이 모두 동일한 펀드를 기준으로 시리즈펀드에 대한 현황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음. 그래서 당사로서는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금감원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판단기준이 당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서 시리즈의 이슈(issue)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건 펀드를 설정하였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3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4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5호 『(주)블루베리엔에프티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50분 폐회)